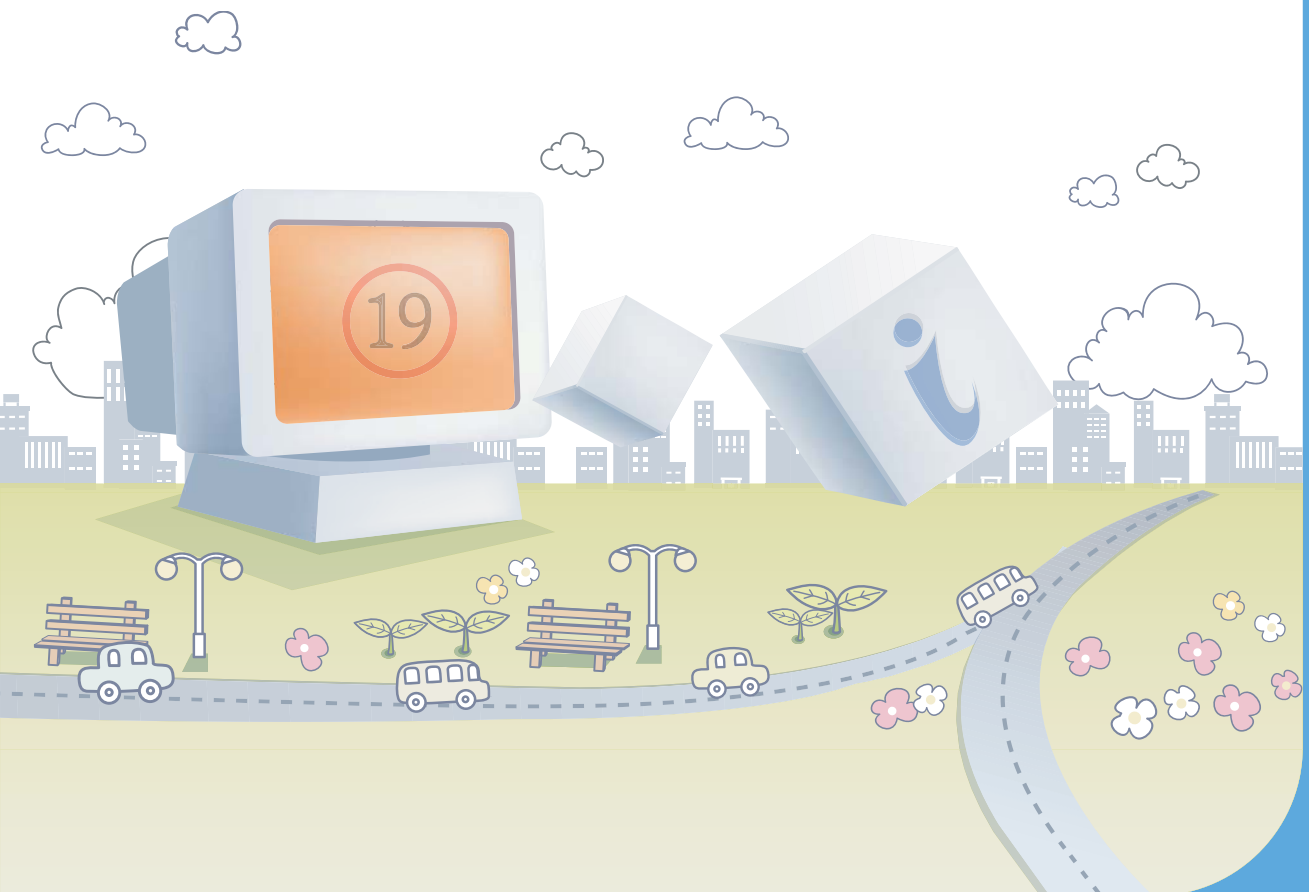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보이용을 위한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의 활용

www.safenet.ne.kr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터넷 이용,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이진강입니다.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09년도가 저물어 갑니다.

지난 9월 청소년 유해정보의 심각성과 차단 소프트웨어의 필요성 등을 소개하는 ‘청소년 인터넷 안전망 그린i-Net’ 홍보 자료집 발간에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사업을 알려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음란물과 같은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비율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청소년의 대부분이 인터넷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안전망 그린i-Net’ 이용과 더불어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는 정보제공자나 공공기관이 표준등급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급을 표시하면, 학부모, 교사 등 청소년보호자가 ‘그린i-Net’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청소년들이 적정 등급의 인터넷 정보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학부모님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청소년 인터넷 안전망 ‘그린i-Net’ 서비스 역시,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병행되어야 그 효과가 더 빛날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가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인터넷 안전망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2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이진강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가 유해정보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줍니다.”

CONTENTS

1.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활용 배경	
1-1 청소년 인터넷 유해정보의 심각성 -----	06
1-2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자율규제의 필요성 -----	10
1-3 등급분류 이용 표준기술의 개발 -----	11
2.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의 이해	
2-1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란? -----	14
2-2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의 구성 -----	16
자율등급표시 -----	17
제3자등급표시 -----	19
내용선별 S/W -----	20
3.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의 도입	
3-1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도입과정 -----	24
3-2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추진현황 -----	25
4. 청소년을 위한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의 활용	
4-1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이렇게 이용하면 됩니다! --	32
정보제공자: 사이트 개설자의 경우 -----	32
정보이용자: 학부모의 경우 -----	34
4-2 그린i-Net의 내용선별 S/W 사용하기 -----	36
4-3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두 배로 활용하기 -----	39
5. 외국의 인터넷 관련 청소년 보호 대책	
5-1 미국의 경우 -----	42
5-2 호주의 경우 -----	44
5-3 유럽의 경우 -----	47
5-4 일본의 경우 -----	52

발행인 : 이진강

발행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58-71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03-1

방송회관

전화 02)3219-5114

인터넷 : <http://www.kocs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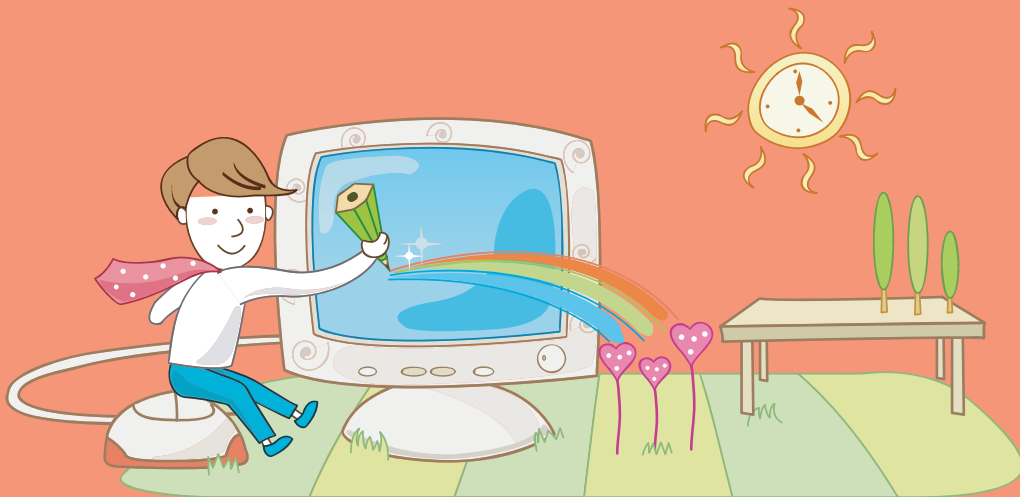
발행일 : 2009년 12월 (비매품)

디자인 : 맥미디어 (02.2263.6485)

인쇄 : 두바인더 (031.944.8371)

※ 본 책자의 저작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있으며,
책자내용의 무단도용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01 www.safenet.ne.kr



1.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활용 배경

- 1-1. 청소년 인터넷 유해정보의 심각성
- 1-2.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자율규제의 필요성
- 1-3. 등급분류 이용 표준기술의 개발

1.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활용 배경

1-1. 청소년 인터넷 유해정보의 심각성



청 소년들의 인터넷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어릴 때부터 음란물이나 폭력 등 인터넷 유해정보에 노출되는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살사이트 접속, 인터넷 게임 중독, 채팅, 사이버 테러 또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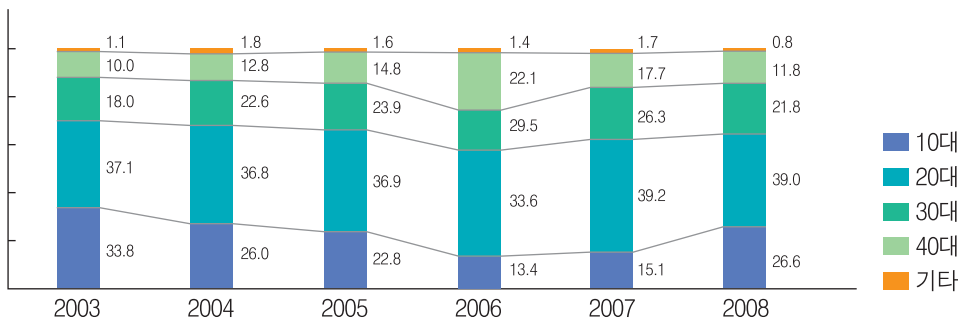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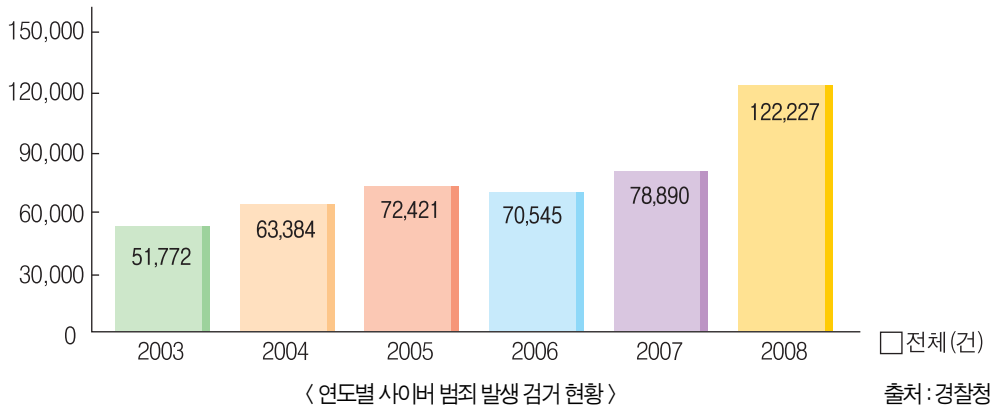
아직 자아가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대개 음란물이나 폭력물에 나타난 행위들을 아무 생각 없이 모방하려는 성향을 보입니다. 특히,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교생들은 모방행동과 더불어 정신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음란물이나 폭력 등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호기심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를 접하고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중독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후에는 실제 행위로 해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것이 곧 청소년 범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사이버 상에서 벌어지는 범죄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인터넷의 개방성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불법적이고 불건전한 정보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 청소년 사이버 범죄의 증가 현상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03년부터 사이버 범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지난해인 2008년에는 10만 건을 넘어서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사이버 범죄 중 약 27%가 10대 청소년들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이상	기타
2003	33.8%	37.1%	18.0%	10.0%	1.1%
2004	26.0%	36.8%	22.6%	12.8%	1.8%
2005	22.8%	36.9%	23.9%	14.8%	1.6%
2006	13.4%	33.6%	29.5%	22.1%	1.4%
2007	15.1%	39.2%	26.3%	17.7%	1.7%
2008	26.6%	39.0%	21.8%	11.8%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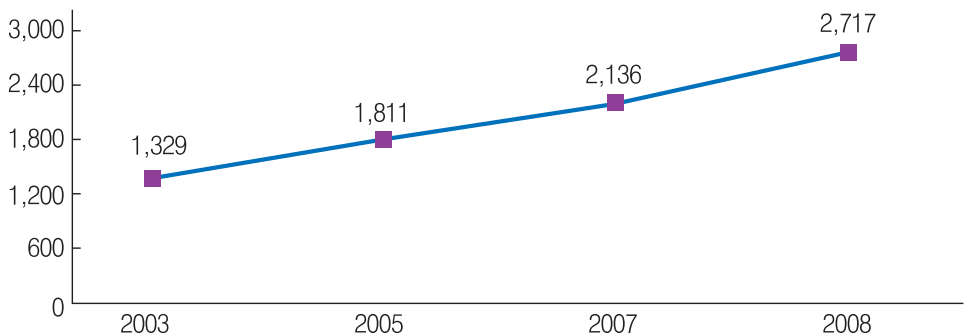
출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사이버범죄 연령별 현황〉

■ 인터넷 음란물에 의한 청소년의 성범죄

인터넷의 수많은 유해정보 중에서도 음란물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생의 과반수가 매일 음란물을 검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음란물이 청소년의 성범죄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인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통계에 의하면 성폭력 가해자 중 미성년자의 수가 2005년 1,329명이었던 것에 비해 2008년에는 2,71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몇 년 새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는 미성년자의 수가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조은뉴스 2009.11.20)



출처: 국회의원 이은재 / 단위: 명

〈2005~2008년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 추이〉

주목해야 할 것은 미성년자 중에서도 만 7세 이상~만 14세 미만 가해자들이 2005년 8%에서 2008년 26%로 18%나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연령뿐 아니라 가해자의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데이터 뉴스 2009.11.9)

전문가들은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음란물 콘텐츠가 청소년의 성범죄를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누구나 쉽게 음란물을 볼 수 있고, 또 본인이 원치 않아도 스팸메일을 통해 음란물을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청소년들의 성범죄에 나타난 범행 장면이 인터넷 음란물에서 표현되는 행동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경우 인터넷 포르노 행위를 따라하는 것이 일종의 놀이문화가 될 정도로 사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상에서 범람하는 음란·폭력물에 따른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도덕을 바로잡고 청소년들을 온갖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업계 및 시민단체 그리고 학부모와 교사 등 청소년 보호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청소년 인터넷 유해정보의 유형

청소년 유해정보란, 청소년보호법 제8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거,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결정하여 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을 말합니다. 청소년위원회의 고시는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www.mw.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9년 11월 말까지 고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총 24개의 매체에서 나타난 유해정보 141,762건 가운데 인터넷 유해정보는 65,865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인터넷 유해정보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음란물을 들 수 있습니다. 자살이나 폭력 등을 조장하는 내용 또한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청소년 인터넷 유해정보를 매체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종 류	사 례
텍스트	· 유해게시물 · 유해소설	· 인터넷게시판, 성인사이트 등에 게시된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소설 및 게시물 · 자살을 조장하는 사이트에 게시된 자살 경험담 · 폭발물 제조 방법
이미지	· 유해사진, 그림, 만화, 애플릿(움직이는 그림)	· 노골적인 노출 및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사진 · 잔혹한 살해 및 폭력성을 묘사하고 있는 사진 · 근친상간 등 음란하고 비정상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일본만화
동영상	· 실시간 동영상물 · 파일형 동영상물	· 노골적인 성행위 묘사 및 폭력성을 포함하고 있는 동영상
게 임	· 음란게임 · 폭력게임 · 사행성게임	· 퇴폐적인 내용의 일본 게임물 · 잔혹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게임물 · 실제 현금을 사용하는 사행성 온라인게임
기 타	· 음란대화 · 음란사이트 배너광고 · 음란물 판매광고	· 채팅사이트를 사용한 음란채팅 · 캡을 이용한 성인채팅 · 성인웹사이트 배너광고

〈청소년 인터넷 유해정보의 유형〉

이처럼 인터넷 상에서 청소년 유해정보가 늘어나는 것에 반해,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법적 제재의 수준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사이트가 생성되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왕성한 호기심을 잠재울 수 있는 여과장치나 보호벽 등도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터넷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국가 간 경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각국의 문화가 스스럼없이 유동합니다. 이는 곧 다른 나라의 유해정보가 손쉽게 국내로 유입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국제 환경 속에서 청소년 유해정보의 유통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을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와 함께 정보제공자와 정보이용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1.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활용 배경

1-2.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자율규제의 필요성



청 소년들이 폭력적이거나 음란성이 강한 정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합니다. 청소년 인터넷 유해정보에 대한 규제에는 자율규제와 자율규제의 방식이 있습니다.

타율규제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만, 청소년들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효과를 거두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타율규제보다는 자율규제의 적극적인 참여 및 행위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규제는 이용자 스스로 인터넷 이용을 조절하거나 유해한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행위 그리고 학부모의 관심과 지도를 통한 규제를 말합니다.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 청소년의 경우, 스스로 인터넷 이용을 조절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학부모나 교사 등 청소년 보호자를 통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녀가 음란물 등 인터넷 유해정보를 접한 사실을 알게 되면, 크게 혼을 낸 후 인터넷을 끊거나 아예 컴퓨터를 없애버리는 방법을 취합니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자녀들을 완전하게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학부모는 자녀들의 인터넷 이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유해정보가 침입하지 않도록 자녀의 컴퓨터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학부모의 개입 및 지도는 자녀의 인터넷 이용을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율규제는 인터넷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만들어 바람직한 정보사회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요건입니다. 따라서 정보제공자는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율규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학부모는 자녀의 컴퓨터에 유해정보가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야 합니다.



1.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활용 배경

1-3. 등급분류 이용 표준기술의 개발

인터넷 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온갖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율규제방식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인터넷내용등급제입니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표준등급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등급표시를 하면, 정보이용자가 이를 도서관의 분류된 자료처럼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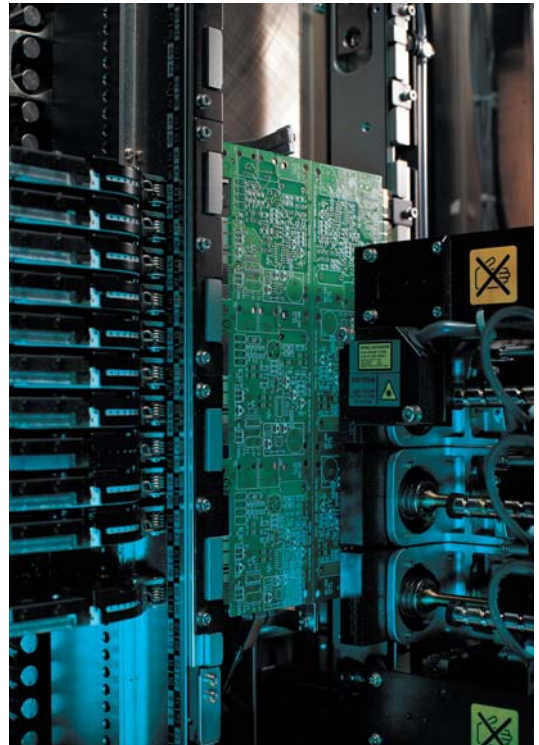
이 제도는 정보제공자의 자율성을 중시하면서 동시에 정보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인터넷 유해정보를 규제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내용등급제도에 관한 논의는 미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1995년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에 의해 인터넷내용분류를 위한 기술표준인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가 개발되었습니다.

PICS는 단순히 정보내용을 규제하는 차원이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중립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정보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를 PICS에 따라 분류하면, 정보이용자들은 해당 정보를 선택할 것인지, 차단할 것인지를 스스로 설정하여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취사선택하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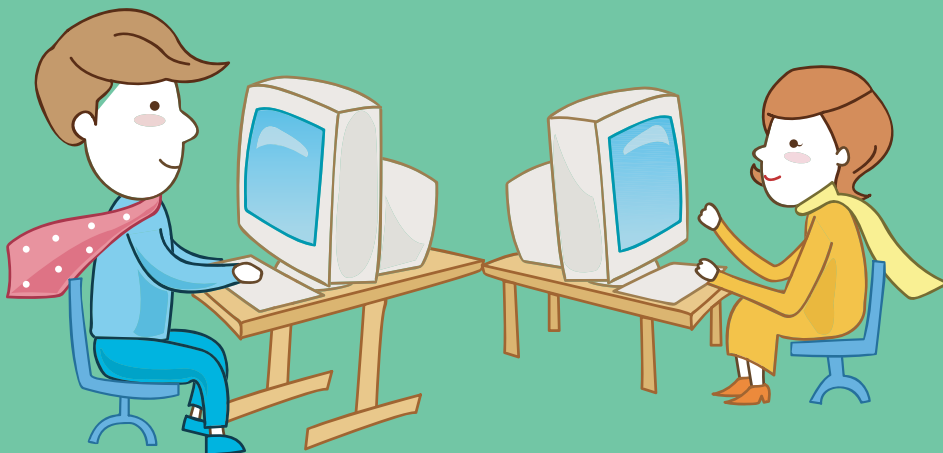
1996년 미국에서는 타임지의 사이버 포르노 논쟁(Cyberporn Debate)과 통신품위법 등 인터넷 불건전 정보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됨에 따라, PICS를 등급기술로 이용하는 방법에 관한 논의가 IHPEG(Information Highway Parental Empowerment Group: 정보고속도로 하에서 부모들의 권리 향상을 위한 모임)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인터넷의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자 이를 차단하는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PICS 기술을 이용하는 인터넷내용등급제가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는 PICS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개발된 내용선택 S/W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국의 사회·문화적 정서에 부합되는 독자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02

www.safenet.ne.kr



2.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의 이해

2-1.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란?

2-2.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의 구성

- 자율등급표시
- 제3자등급표시
- 내용선택별 S/W

2.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의 이해

2-1.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란?



오늘날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인터넷은 자유롭고 창조적인 공간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와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과 달리, 인터넷이 지니는 익명성, 상업성으로 인해 음란물이나 폭력물 또한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혼란스러운 가치관을 제공하고, 때로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의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정보제공자의 당연한 사회적 책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정보제공자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동시에 정보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가 바로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입니다.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는 정보제공자가 객관적 등급기준에 따라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에 자율적으로 등급을 표시하면, 정보이용자가 등급표시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아가 미성숙한 10대 청소년들은 스스로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보 선택에 대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부모나 교사가 내용선택별 S/W를 설치하여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합니다.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는 정보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인터넷 공간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며, 또한 청소년들에게는 인터넷상의 온갖 유해정보를 차단하여 인터넷을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처럼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는 정보제공자에게 사회적 책임에 충실하도록 하고, 정보이용자에게는 청소년 보호 장치를 제공함으로써 오늘날 국제적으로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 자율적 규제+교육적 수단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자율적인 규제를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자율등급표시	정보제공자가 공시된 등급기준을 참고하여 자신의 사이트에 자발적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
제3자등급표시	정부나 관련 인증기관이 콘텐츠에 등급을 부여하여 목록을 구축하면, 정보이용자가 내용선택 S/W를 이용하여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보만을 수용하는 방식

‘자율등급표시’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나 사이트 제작자가 자신의 정보내용에 표준등급기준을 참고하여 자발적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어린이 장난감 제조업체가 사용 가능한 연령을 표시하여 구매자가 이를 참고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는 자율적인 행동이니만큼 정보제공자가 양심적이라는 전제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3자등급표시’는 해외의 음란·폭력물 등을 중심으로 정부나 인증기관이 등급을 부여해서 목록으로 구축하면, 정보이용자가 이를 참고하여 정보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국내법에 적용되지 않는 해외 서버 사이트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음란물이나 폭력물 등에 관한 것을 DB로 구축한 것을 말합니다.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는 정보선택의 권한이 정보이용자에게 주어진다는 점에서 검열 없는 자율적 규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 연령이나 지적 수준에 따라 정보 수용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나 교사 등에게 교육적인 수단을 제공합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도입하여 자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등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한국의 문화와 국제 호환성을 고려한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www.safenet.ne.kr)를 개발하여 2001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의 이해

2-2.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의 구성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의 큰 틀은 정보제공자의 자발적 등급표기에 따른 정보이용자들의 선택권 보장에 있습니다. 정보제공자는 자신의 정보를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의 등급기준(폭력, 섹스, 노출, 욕설 등)에 따라 분류하고 등급을 표시합니다.

인터넷 유해정보에 따른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정보제공자의 사회적 책임의식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제공자의 양심적이고도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모델은 다음의 3가지 축(자율등급표시, 제3자등급표시, 내용선별 S/W)을 중심으로 실행됩니다.



■ 자율등급표시

정보제공자는 자신이 설립한 사이트의 내용이 어느 정도의 노출과 폭력, 성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의 등급기준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등급을 표시합니다.

가령, A라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게임 사이트를 개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A는 자신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이 상대 캐릭터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의 등급기준인 '4등급' 을 표시하였습니다.

A가 표시한 폭력 '4등급' 은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가 권장하는 연령별 등급제에서 '18세 이상(성인가)' 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내용선택 S/W가 설치된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때 A가 운영하는 게임 사이트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정보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하고자 하는 콘텐츠에 일정한 기준에 따른 등급을 표시하면 됩니다. 등급표시는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 기타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인터넷내용선택 기술표준인 PICS에 의해 정해진 것입니다.

각각의 범주에 부여한 등급이 맞는지 확인한 후, 정보제공자는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가 제공하는 등급라벨을 제공받게 됩니다. 등급라벨은 자신이 제공하는 사이트의 소스(source) 헤더(header) 내부에 이미지 복사를 통해 사이트에 표시됩니다.

정보제공자가 등급라벨을 붙였다는 것은 인터넷상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 책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율등급을 위한 전자태그와 등급표시마크는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홈페이지(www.safenet.net.kr)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율등급예시보기

home < 등급서비스 이용하기 < 자율등급예시보기

정보제공자의 자율등급표시 예시

<META http-equiv="PICS-label" content=" (PICS-1.1

"http://www.safenet.net/kr/rating.html" I gen true/false) for

"정보제공자 자율등급표시 URL 명" (n 1 s 1 v 2 1 3 i 0 h 1))>

- 관련 기관 서비스 URL 명 : <http://www.safenet.net/kr/rating.html>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홈페이지 URL명임)
- 「true」 는 사이트와 디렉토리단위, 「false」 는 페이지단위에 대한 등급표시일 경우
- 「정보제공자 자율등급표시 URL 명」
자율적으로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등급표시를 하고자 하는 정보제공자의 사이트
(혹은, 해당 디렉토리, 페이지) URL 명
- 등급기준의 값(자세한 사항은 등급표시 참조)

항목	등급기준 값
노출 (n)	0 ~ 4 등급
성행위 (S)	0 ~ 4 등급
폭력 (V)	0 ~ 4 등급
언어 (I)	0 ~ 4 등급
미약사용조장, 무기사용조장, 도박 (I)	0 혹은 1 (없음: 0, 있음: 1)
음주조장, 흡연조장 (h)	0 혹은 1 (없음: 0, 있음: 1)

< 자율등급표시 등록화면의 예 >

| 17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이용자에게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음란·폭력물 등의 불법·유해정보를 선별 차단할 수 있는 내용선별 S/W를 개발하였습니다.



- 이마크가 인터넷상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제공자의 책임의 표현임을 인정합니다.
- 이마크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 자율등급표시 마크 및 그와 유사한 어떠한 마크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율등급표시마크〉

수준 범주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	기타
4등급	성기노출	성범죄 또는 노골적인 성행위	잔인한 살해	노골적이고 외설적인 비속어	1. -마약사용 조장 -무기사용 조장 -도박
3등급	전신노출	노골적이지 않은 성행위	살해	심한 비속어	
2등급	부분노출	착의상태의 성적접촉	상해	거친 비속어	
1등급	노출복장	격렬한 키스	격투	일상 비속어	2. -음주 조장 -흡연 조장
0등급	노출없음	성행위 없음	폭력 없음	비속어 없음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의 등급기준〉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 기타 세부내용에 관한 등급기준은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홈페이지(www.safenet.ne.kr) 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콘텐츠에 대한 내용등급 기준을 설정할 때 연령별 구분을 함께 표시하였습니다. 연령별 구분은 실질적으로 내용선별 S/W를 이용하는 학부모나 교사 등 청소년 보호자가 등급설정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감안, 쉽게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권장사항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
전체가(초등학생가)	1등급	0등급	1등급	0등급
12세 이상(중학생가)	2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15세 이상(고등학생가)	2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18세 이상(성인가)	3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연령별 등급권장 사항〉

■ 제3자등급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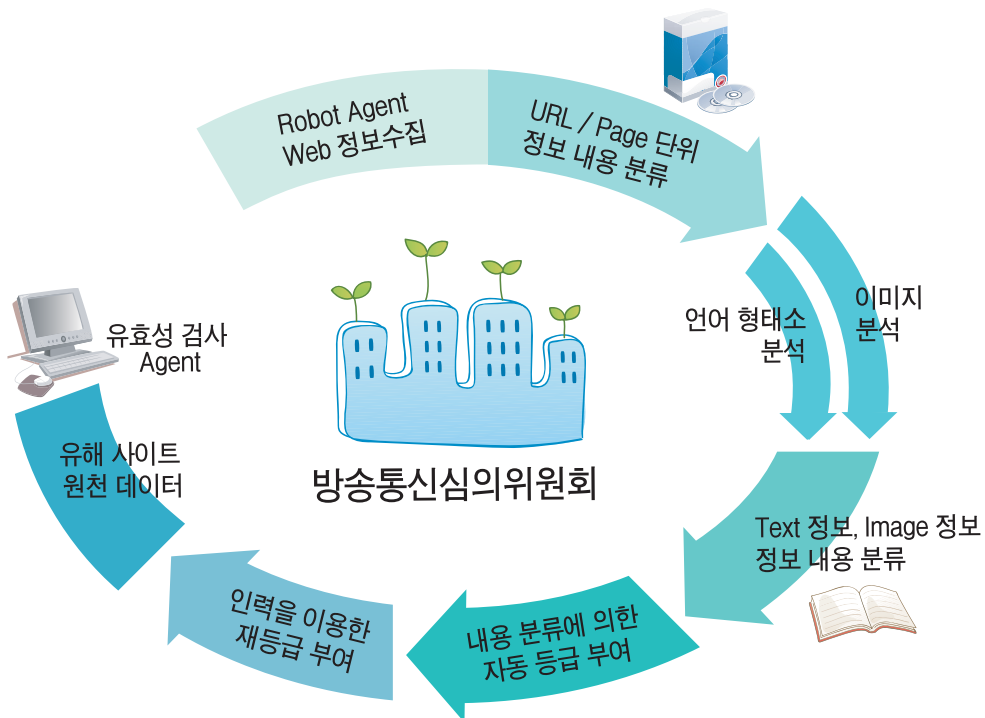
제3자등급표시는 제3자, 즉 정부나 관련 인증기관이 해외의 음란·폭력물 등의 인터넷 유해정보에 등급을 표시, 이를 DB로 구축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제공자의 적극적인 자율등급표시를 홍보·권장할 수 있는 국내 사이트와 달리, 해외 사이트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적이고 불건전한 사이트를 비롯하여 다양한 인터넷 유해정보가 보다 손쉽게 국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 사이트에 대한 법적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역이용, 불법 유해 사이트를 해외 서버로 개설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이트 개설자가 국내업자라고 하더라도 해외에 서버를 개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이를 처벌할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舊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해외 사이트에 대해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의 등급기준에 준하여 사이트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목록으로 구축해 놓았습니다. 이 목록이 해외 청소년 유해정보 DB입니다.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등급기준은 현재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RASCI, ICRA, ENC 등의 등급기준과 호환성을 고려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제적 호환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제3자등급표시서비스 흐름도 〉



■ 내용선별 S/W

내용선별 S/W는 정보제공자가 자율적으로 표기한 등급 정보나, 제3자가 매긴 등급에 관한 내용을 인식하여 정보이용자들이 설정한 등급에 따라 내용을 선별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컨대, 부모가 '키즈락(kidslock)' 과 같은 프로그램을 자녀의 컴퓨터에 설치해두면, 자녀들이 성인 음란물과 같은 유해 콘텐츠에 접근할 때 프로그램 기술에 의해 접근을 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다양한 종류의 내용선별 S/W가 유·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학부모나 교사 등 청소년 보호자가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린i-Net' 을 통해 14개의 필터링 S/W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의 필터링 S/W는 '그린i-Net' 홈페이지(www.greeninet.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내뿐만 아니라 학교나 도서관 등 청소년들이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환경에서 또한 인터넷 유해정보에 대한 차단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사나 각 기관의 책임자들은 컴퓨터에 불법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내용선별 S/W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학부모들은 각 가정에서 자녀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그린i-Net' 에서 제공하는 필터링 S/W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면 됩니다.

내용선별 S/W는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를 최종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며, 온갖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안전보호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자녀에게는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부모에게는 자녀에 대한 깊은 사랑을 심어줍니다!”



>>03

www.safenet.ne.kr



3.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의 도입

3-1.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도입과정

3-2.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추진현황

3.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의 도입

3-1.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의 도입과정

1999년 10월 22일 국무회의의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종합대책’에서 인터넷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00년 7월 등급기준을 위한 자문단이 구성되었으며, 같은 해 9월 舊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내용등급팀과 정보기술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월 19일에는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여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2001년 2월 등급전문위원회가 구성된 후, 그 해 6월 26일 자문단과 등급전문위원회를 거쳐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SafeNet)’라는 독자적인 등급기준을 최종적으로 확정·발표했습니다.

제3자등급표시에 의한 청소년유해정보등급DB 시스템은 2001년 4월부터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에는 내용선별 S/W를 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의 기본 체계가 구축된 이후, 2001년 9월 24일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홈페이지(www.safenet.ne.kr)를 개설하여 자율등급표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11월 19일에는 내용선별 S/W의 기술 이전이 시작되었고, 2002년 7월에는 합격제품 인증서 및 인증 마크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2월 29일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舊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업무를 승계하여, 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관련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3.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의 도입

3-2.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추진현황

■ 자율등급표시 활성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내 정보제공자의 자율등급 표시 정보 중 부정확한 등급기준을 적용하거나, 기술적 표시오류를 한 사이트를 대상으로 수정권고를 하고 있으며, 등급표시를 한 사이트에 대하여 자율등급 표시 마크를 부여하는 등 국내 정보제공자의 자율등급 표시 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1년 10월 자율등급DB 구축을 시작으로 2009년 9월까지 등록된 자율등급표시 등록DB는 총 11,227건에 이르며, 신뢰성 있는 DB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최적화 작업(폐쇄 사이트 및 자율등급표시 수정 사이트)을 통해 삭제된 약 5,955건을 제외하면, 2009년 까지 유효한 자율등급표시 등록DB는 4,427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구분	자율등급표시 건수
2001	1,701
2002	3,255
2003	1,088
2004	396
2005	269
2006	169
2007	3,407
2008	64
최적화(2001 ~ 2008) 삭제	-5,955
2009	33
합계	4,427

〈연도별 자율등급표시 등록건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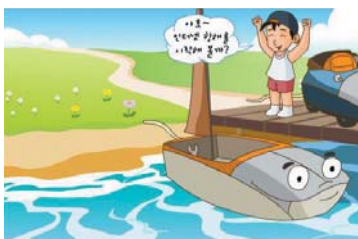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자율등급 표시 활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2회 이상 SEK, SoftExpo 등 주요 IT 전시회와 대한민국 우표전시회 등에 참여하여 인터넷내용등급 서비스를 홍보함으로써 자율등급서비스 보급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제공자에게는 자율등급표시를 권장하고 정보이용자에게는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 등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내용선택 S/W의 보급·확산을 위해 모두 5차례에 걸쳐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홈페이지(www.safenet.ne.kr)를 개편하였습니다.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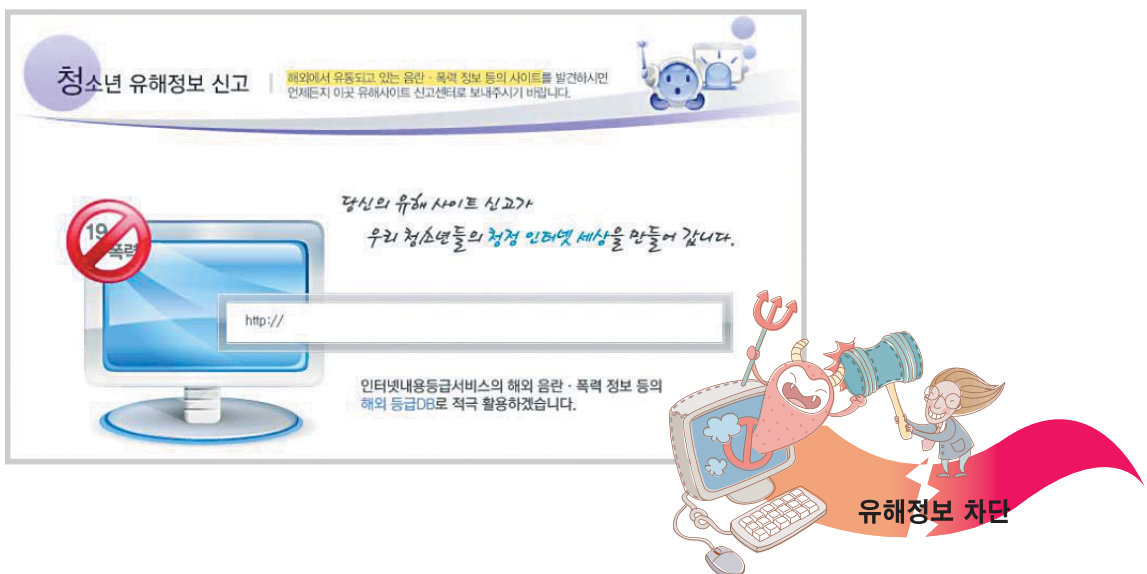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애니메이션 영상물 자료〉

■ 해외 청소년유해정보등급DB 구축

2001년 해외 청소년유해정보등급DB 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지속적인 구축이 이루어져 2009년 9월 현재, 해외 음란·폭력물로 구성된 해외 청소년유해정보등급DB는 576,407건(2001~2008년 유효성 검사를 통한 폐쇄·변경 사이트 142,099건 제외)에 이릅니다. 이러한 청소년유해정보등급 DB는 이용업체 및 내용선별 S/W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구분	해외 청소년유해정보등급DB 건수
2001	119,914
2002	51,224
2003	39,035
2004	31,204
2005	56,716
2006	124,283
2007	145,227
2008	93,442
최적화(2001 ~ 2008) 삭제	-142,099
2009. 9.	57461
합계	576,407

〈 연도별 해외 청소년유해정보등급DB 구축 현황 〉





■ 내용선택별 S/W 보급 확대

2001년 7월 내용선택별 S/W 개발에 착수, 같은 해 12월 기술개발이 완료되어 2008년도까지 보급된 소프트웨어(위원회에서 개발한 SafeNet과 민간업체 제품 포함)는 약 196만여 건에 이릅니다.

구분	내용선택별 S/W 보급 건수
2001	—
2002	95,499
2003	305,624
2004	558,029
2005	252,376
2006	329,999
2007	305,154
2008	123,129
합계	1,969,810

〈 연도별 내용선택별 S/W 보급 현황 〉

이 중 SafeNet은 도서관, 우체국 등 공공기관과 학교 및 청소년 단체,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중심으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무료보급하였습니다.

구분	1차 보급	2차 보급	3차 보급	4차 보급
배포시기	2002.6.28~7.10	2002.12.21~12.23	2003.12.17~19	2008.2.1~25
배포수량	약 10,000장	약 36,000장	약 10,000장	약 4,000장
배포처	우체국 인터넷플라자 등	생활보호대상자, 도서관 등	소년소녀가장 등	학교 및 청소년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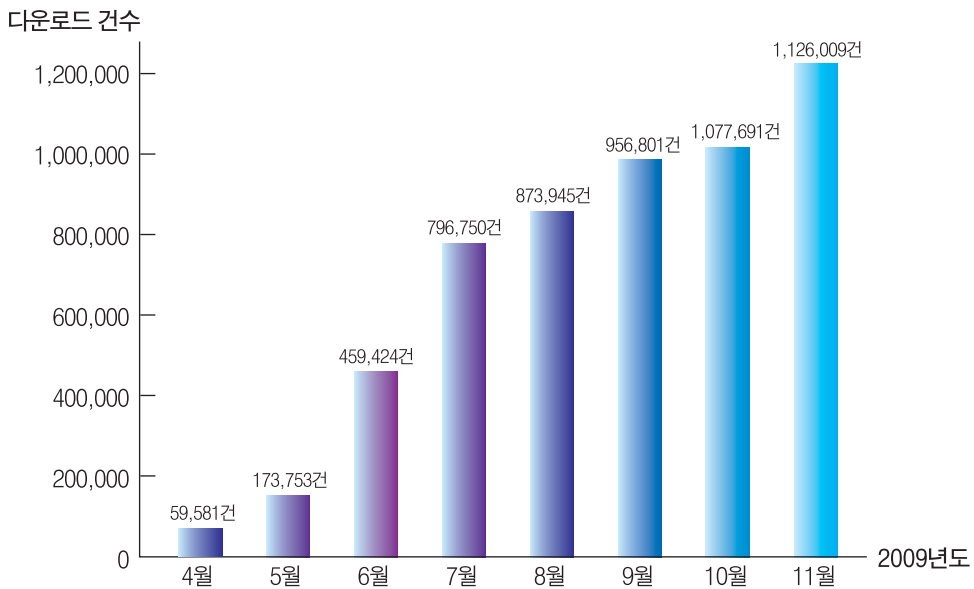
〈 SafeNet 무료보급 현황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28일 '안전한 인터넷 환경조성을 위한 업무협력 합의서'를 체결하고 유해정보 필터링 S/W의 개발·보급 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은 청소년들이 인터넷 유해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인터넷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인터넷 안전망 '그린i-Net'을 통해 내용선택 S/W를 희망하는 가정에 무료 보급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린i-Net의 보급·확산을 위한 대국민참여 프로그램 '그린i-Net 캠페인'을 전개한 결과, 6개월 만에 100만 건의 다운로드를 달성하여, 2009년 11월말 기준으로 총 1,126,009건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린i-Net 무료보급 현황〉

>>04

www.safenet.ne.kr



4. 청소년을 위한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의 활용

41.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이렇게 이용하면 됩니다!

- 정보제공자: 사이트 개설자의 경우
- 정보이용자: 학부모의 경우

42. 그린i-Net의 내용선택 S/W 사용하기

43.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두 배로 활용하기

4. 청소년을 위한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의 활용

4-1.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이렇게 이용하면 됩니다!

정보제공자: 사이트 개설자의 경우

1. 김씨는 지난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팅 사이트를 개설하고 현재는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김씨는 전시회를 통해 알게 된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를 자신의 사이트에도 활용하기로 결심합니다.



2. 김씨는 인터넷 웹 브라우저를 실행하여 인터넷내용등급제(www.safenet.ne.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정보제공자인 김씨는 '등급서비스 이용하기'에서 '자율등급표시'를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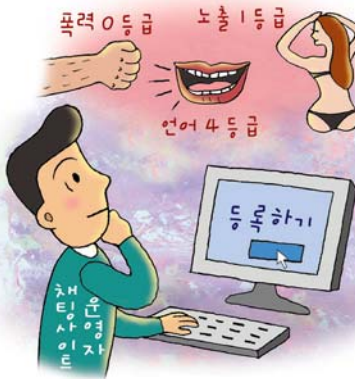
3. 김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 등의 범주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등급을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김씨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가 진단을 통해 자신의 사이트 등급을 확인해보기로 합니다.



4. 노출등급에서 김씨는 자신의 사이트에 올린 광고 이미지를 생각하여 두 번째 등급을 표시합니다. 하지만, 성행위등급과 폭력등급은 해당 없기때문에 가장 낮은 등급을 선택합니다.

5. 가장 문제가 되는 언어등급에서 김씨는 자신의 사이트에서 오고가는 언어적 내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여 가장 높은 등급을 표시합니다.
그 외 기타 세부내용에 관해서도 적정하다고 판단한 등급을 부여합니다.



6. 김씨가 자가 진단한 사이트 등급은 '노출 1등급', '성행위, 폭력 0등급', '언어 4등급'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씨는 이 같은 결과를 등급표시에 적용하기 위해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자율등급의 진단 결과 김씨의 사이트는 언어 범주에서 '18세 이상(성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씨는 이 같은 결과를 등록하고 등급라벨을 받아 자신의 사이트에 붙입니다.



8. 김씨가 표시한 등급에 따라 앞으로 청소년들은 내용선별 S/W가 설치된 컴퓨터에서는 김씨가 운영하는 채팅 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김씨는 자율등급표시를 통해 자신의 사이트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이로써 자신이 올바른 인터넷 문화 정착에 일조한 것 같아 가슴이 뿌듯합니다.

정보이용자: 학부모의 경우



1. 엄마는 아들 준혁(14세)을 위해 인터넷 상의 유해정보에 대한 접속을 선별할 수 있는 S/W를 설치하기 위해 컴퓨터를 켭니다.

얼마 전, 홍보물을 통해 알게 된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그린i-Net'에서 제공하는 무료 필터링 S/W를 클릭합니다.

2. 엄마는 내용선별 S/W 파일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관리자모드에서 직접 등급설정을 할 수 있지만, 등급설정에 익숙하지 않은 엄마는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에서 권장하는 연령별 기준을 이용하여 등급을 설정합니다.

엄마는 준혁이 14세인 것을 감안하여 '12세 이상 이용가능'을 선택합니다. 환경설정은 관리자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3. 저녁 찬거리를 사러 엄마는 시장에 가고, 준혁은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 웹 브라우저를 실행합니다.

준혁이 혼자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지만, 엄마는 안심하고 집을 비웁니다. 내용선별 S/W가 14세인 준혁에게 유해한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4. 준혁은 인터넷에서 여러 정보를 즐깁니다.



5. 준혁이 검색 엔진에서 발견한 새로운 사이트에 접근을 시도합니다. 이 사이트는 폭력 '3등급'에 해당하는 살해 관련 사이트였습니다.

6. 사이트 링크를 클릭했지만, 준혁은 원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설치한 내용선택 S/W의 등급설정에서 폭력 '3등급'은 14세 청소년의 이용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7. 엄마가 시장에서 돌아오자 준혁은 인터넷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8. 엄마는 준혁에게 지금 접속하려고 하는 사이트가 "너의 가치관과 공부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준혁은 "나는 건전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어요"라고 주장합니다.



9. 대화를 통해 엄마와 준혁은 폭력 범주만 '3등급'으로 등급설정을 수정하였습니다. 대신 웹 서핑 도중에 일어난 일이나 본 내용에 대해 엄마나 아빠와 자주 대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0. 준혁은 엄마가 자신을 좀 더 어른스럽게 평가해 주었다는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4. 청소년을 위한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의 활용

4-2. 그린i-Net의 내용선택 S/W 사용하기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는 최종적으로 정보이용자가 내용선택 S/W를 설치함으로써 실현됩니다. 내용선택 S/W는 정보제공자가 표시한 등급을 정보이용자가 참고하여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청소년들을 인터넷 음란물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정보 차단 S/W를 무료로 제공하는 ‘그린i-Net’을 만들었습니다.

그린i-Net은 청소년들이 인터넷 유해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전하고 올바르게 인터넷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 시도 교육청 등이 협력하여 만든 청소년 인터넷 안전망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인터넷 주소창에서 www.greeninet.or.kr를 접속하면 무료로 필터링 S/W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이 14개의 유해정보 필터링 S/W의 기능을 비교하여 원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나 교사 등 청소년 보호자는 그린i-Net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무료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쉽고 편리하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종류’를 클릭하면 그린i-Net에서 제공하는 14개의 S/W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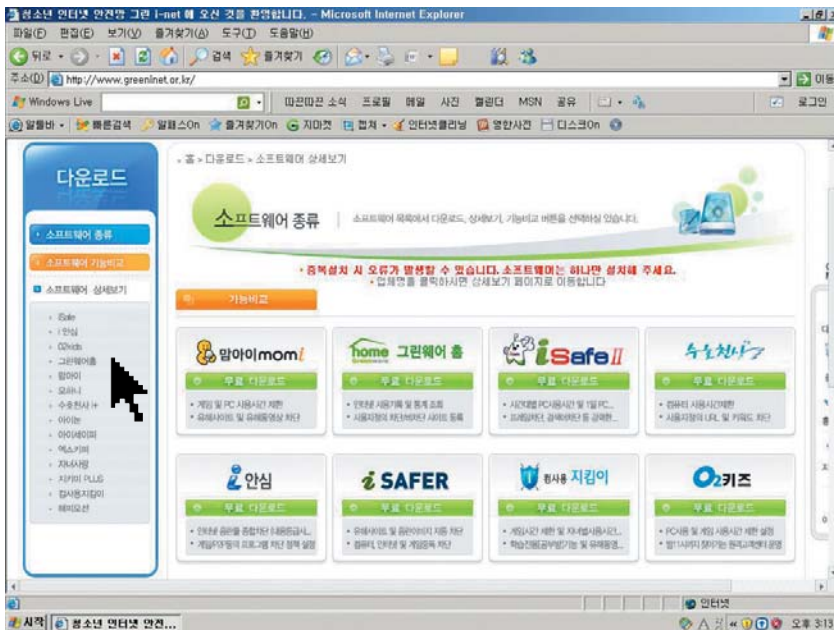
■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1 다운로드 페이지 이동



▶그린i-Net 홈페이지 첫 화면에 '무료다운로드' 클릭버튼이 있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프트웨어 선택



- ▶소프트웨어 종류를 클릭하면 그린i-Net에서 제공하는 14개의 소프트웨어가 한 눈에 들어옵니다.
- ▶소프트웨어 기능 비교에는 14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특징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되어 소프트웨어 선택이 빠릅니다.
-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소프트웨어 상세보기' 코너를 클릭하면 됩니다. 개별 소프트웨어에 대한 상세설명은 물론 설치방법과 사용방법, 자주하는 질문, 이용문의 등 필요한 정보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3 다운로드 버튼 클릭



▶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선택했다면 소프트웨어 상세보기 하단에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는 코너가 있어 곧바로 다운로드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용자 정보 입력

▶ 다운로드를 하기 위한 전단계로 이용자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학부모 성명과 전화번호 등 몇가지만 입력하면 바로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5 다운로드 받기



▶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업체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설치하면 됩니다.

4. 청소년을 위한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의 활용

4.3.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두 배로 활용하기

내 용선별 S/W를 설치했다고 해서 온갖 유해정보로부터 자녀를 완전히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의 컴퓨터에 선별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 외에도 학부모의 꾸준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아무런 대화 없이 자녀가 쓰는 컴퓨터에 내용선별 S/W를 설치하고 부모 마음대로 등급설정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사정을 모르는 자녀는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사이트 접속이 되지 않는다고 불평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인터넷 사용이 마음대로 되지 않게 될 경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PC방과 같은 외부의 공간에서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이 때 내용선별 S/W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청소년들은 다시 인터넷 유해정보에 노출되고 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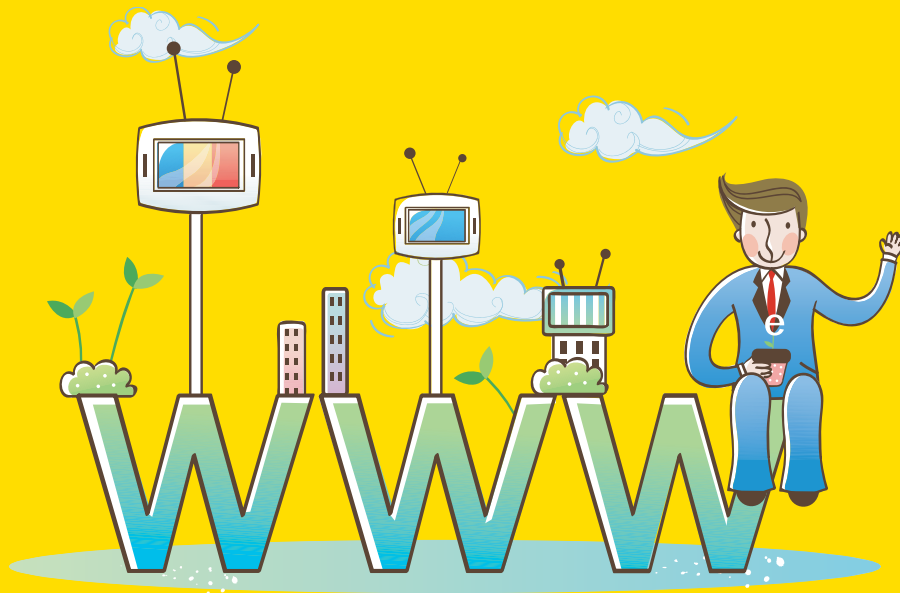
따라서 자녀의 인터넷 사용에 대해 부모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이때 무조건적으로 사이트 접속을 금지하기보다는, 자녀가 접근하려는 사이트가 왜 이롭지 않은지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불건전한 정보에 대해 자녀가 나름대로의 분별력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유해정보에 대한 기준을 세워 놓았다고 판단이 되면, 자녀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여 등급설정을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인터넷을 통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어느 정도의 등급설정을 원하는지에 대해 대화로써 의견을 조정해야 합니다.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대화가 함께 이루어질 때 진정한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05 www.safenet.ne.kr



5. 외국의 인터넷 관련 청소년 보호 대책

- 5-1. 미국의 경우
- 5-2. 호주의 경우
- 5-3. 유럽의 경우
- 5-4. 일본의 경우

5. 외국의 인터넷 관련 청소년 보호 대책



5-1. 미국의 경우

■ 민간영역 중심의 자율적 규제 모델

미국의 인터넷 규제는 자유주의 모델에 입각하여 공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강조함으로써 규제를 최소화하고, 민간영역 중심의 자율적 규제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미국의 인터넷 규제 시스템은 크게 법규, 모니터링, 신고센터의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인터넷 내용규제를 위한 각종 법률, 내용등급 판정과 모니터링을 위한 사업자단체 규제, 불법 유해물 신고를 위한 시민단체 중심의 핫라인 등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럽에 비해서는 민간영역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 역시 음란표현, 명예훼손, 사생활 등에 해당하는 표현은 엄격한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불법 콘텐츠에 대해 민·형사 처벌이 강도 높게 행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처벌을 피하고자 업체들을 중심으로 자율규제 노력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상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 음란물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여부를 결정하고 사업당국에 보고하는 민간감시망으로 'Cybertipline'을 시행 중입니다.

미국의 민간자율규제 단체와 주요업무

▶ 인터넷콘텐츠등급협회 (ICRA)

인터넷콘텐츠에 대한 등급을 정하여 불건전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노력

▶ CyberAngels

9,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이끌어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터넷 감시단체 운영

▶ IEF (Internet Education Foundation)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건전한 정보이용 확산을 위해 정책입안자, 사업자, 이용자가 상호협력을 위해 노력

▶ WHOA (Working to Halt Online Abuse)

일반이용자와 사법기관의 교육과 피해자 권리행사를 통한 온라인상의 학대근절, 인터넷 공동체를 위한 정책개발 등

미국의 인터넷 내용규제의 기초는 인터넷상 표현된 내용에 대해서는 헌법적 보호를 받지만, 상업적이거나 음란적 표현,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규제를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기반으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위한 협회를 마련,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온갖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차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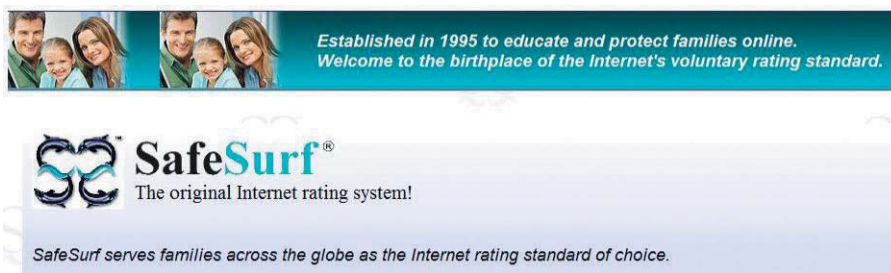
■ 내용선별 S/W: RSACi와 Safesurf

가장 먼저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실시한 미국은 1995년부터 관련 업계가 자율적으로 내용선별 S/W를 개발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락용 소프트웨어 자문위원회(Recreational Software Advisory Council: RSAC)가 개발한 'RSACi'와 세이프서프사가 개발한 'Safesurf'입니다.

RSACi는 폭력, 욕설 등 4개 범주를 중심으로 모두 5단계(0~4)의 등급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년간 대중매체가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온 로버트(Roberts, 스탠포드대) 박사의 연구를 토대로 개발되었는데, 1999년에 ICRA(Internet Content Rating Association)로 흡수되었습니다.

Safesurf는 폭력, 누드, 인종차별 등 10개 범주에 관하여 각각 9등급으로 구분하고, 연령에 따라 정보를 선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RSACi보다는 유해정보의 범주를 세분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사용하고 있는 내용선별 S/W는 바로 이 RSACi와 Safesurf를 따르는 것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청소년 유해정보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각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아동 대상 인터넷 범죄에 대한 법률 강화

미국은 인터넷의 주요 이용자층인 미성년자들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교육을 미성년의 법적 지위에 따른 사회 보호 장치의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2008년 5월 미국 상원 위원회는 '아동착취방지법(Combating Child Exploitation Act)'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아동착취방지법은 인터넷상에서 개인 간 파일 공유를 통해서 아동 포르노를 교환하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고안된 특별 프로그램을 연방, 주, 지역 경찰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008년 10월에는 인터넷 성범죄자들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기업들의 아동 포르노 신고를 의무화하는 '어린이 보호법(Protect Our Children Act)'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법무부에 3억 2천만 달러 이상을 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2009년 1월에는 미국의 5개 연방, 주, 지방의 법 집행기관들이 사이버 범죄자 체포를 위해 2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네브래스카-아이오와 사이버 범죄 태스크포스'를 시작했습니다. 14명의 수사관과 1명의 법의학 조사관으로 구성된 이 태스크포스는 주로 아동 포르노, 신원 도용 및 위조 등을 하는 인터넷 범죄자를 추적합니다.

이와 같이 미국은 아동에 대한 인터넷 범죄에 대해 다양한 법률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향후 8년간 10억 달러 이상을 아동에 대한 인터넷 범죄에 대처하는데 투입할 계획입니다.

5. 외국의 인터넷 관련 청소년 보호 대책

5-2. 호주의 경우



■ 정부, 공공기관의 적극적 규제 정책



호주는 인터넷 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제도를 마련하는 등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활발한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앞장서 불법 유해물을 규제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강력하고 적극적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호주통신미디어청(ACMA: The Australian Communication Media Authority)과 영상문헌등급사무소(OFLC: The Office Film Literature Classification)의 두 기관이 직접적인 규제를 담당합니다.

공공기관의 직접 규제 외에도 인터넷 관련업계의 자율적인 규제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호주

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교육과 홍보를 꾸준히 진행해왔습니다.

1999년부터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하여 필터링, 등급제 등과 같은 콘텐츠 규제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방송법을 개정한 온라인 서비스법을 마련,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호주인터넷산업협회는 1999년 9월 ‘방송 서비스 개정법’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을 발표합니다. 그 중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인터넷 필터링 S/W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호주는 2008년부터 불법 유해 콘텐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웹 필터를 개발, 인터넷 관련 업자에게 제공하는 국가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필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호주 정부는 총 8억2천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정부 주도의 NetAlert를 통한 내용선택 S/W 제공

호주는 인터넷에서 범람하는 다양한 유해정보를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해 ‘국가적 필터 계획(National Filter Scheme)’을 세우고 모든 가정에 필터링 S/W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NetAlert’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이버 안전계획을 위해 설립된 기구로서, 각 가정에 다양한 내용선택 S/W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용선택 S/W를 담당하는 ‘그린i-Net’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호주의 모든 가정에서는 NetAlert 사이트를 통해 필터링 S/W를 선택하여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2008년 12월까지 무료로 제공되었으며, 이후에도 인터넷 이용자들은 2010년 6월까지 NetAlert 사이트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적극 권장하는 인터넷 콘텐츠 필터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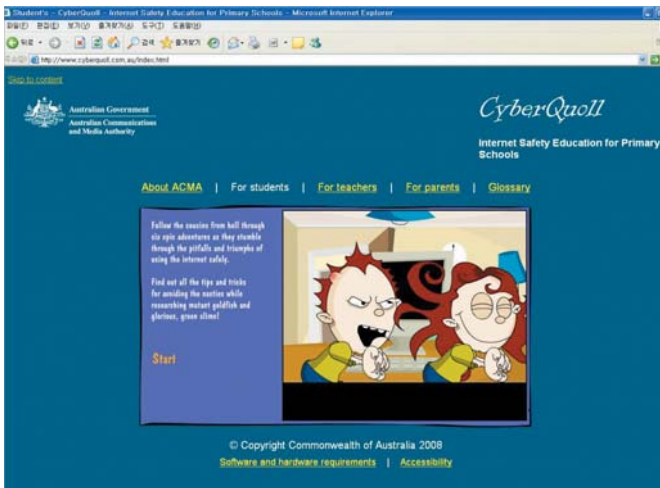
첫째, 호주통신청에 의해 금지된 콘텐츠는 차단하여야 하고, 둘째, 설치와 이용이 쉬워야 하며, 셋째, 기술적 지원(전화, 이메일, 웹사이트 Q&A 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최적의 필터링 S/W를 통해 호주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와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철통같은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필터링	Filterpak v7.7	Integard v1.04	Safe Eyes (PC)	Safe Eyes (Mac)	비고
개별 이용자가 차단 사이트를 추가함					
개별 이용자가 허용한 사이트 외에는 차단					
인터넷 채팅방 차단					
인터넷 게임 차단					
인터넷 뉴스그룹 차단					
개인 정보 송신 차단					
제한된 시간 외에는 접근 차단					
채팅방 용어 감시					
허용되지 않은 사이트 접근 감지					
지정 관리자에 의한 원격 종료					

〈호주 인터넷 콘텐츠 필터링 기능비교〉

■ 등급분류위원회 중심의 체계화된 등급분류제도



〈호주통신미디어청 홈페이지(ACMA:The Australian Communication Media Authority)〉

되기 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일부 출판물 또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등급분류는 모두 등급분류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며, 인터넷 콘텐츠의 분류등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호주는 1995년 출판, 영상물, 게임 등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국가등급분류법(Commonwealth Classification Act)을 제정하였습니다. 등급분류법에 따라 국가기관인 등급분류위원회가 모든 인터넷 콘텐츠에 대해 등급을 결정하면, 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이 등급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등급분류위원회에서 결정된 등급결정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등급재분류위원회가 소집됩니다. 재심 요청은 해당 콘텐츠의 심의 요청자와 각 주(state), 혹은 준(準)주정부의 주지사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주 및 준주정부의 위원장들은 공동 합의에 의해 국가등급분류 규정과 등급분류 가이드라인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호주의 등급분류제도는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합니다. 법률을 통해 등급분류제도를 규정하고, 등급분류기관과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해 시행된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다만, 호주의 경우 영화, 문학, 게임 등 각각의 콘텐츠에 대한 심의를 모두 등급분류위원회가 담당한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즉, 정부기관인 등급분류위원회(Classification Board)가 모든 콘텐츠의 심의를 통합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호주에서 유통되는 비디오 및 DVD를 포함한 모든 영상물과 컴퓨터 게임은 유통

권고등급	G	전체 이용가	법적 구속력 없음
	PG	부모의 지도 및 감독 필요	
	M	성인용	
강제등급	MA15+	15세 이용가	법적 구속력 있음
	R18+	청소년 이용불가	
	X18+		
등급거부	RC	유통과 판매 금지	

〈호주의 연령등급체계〉

5. 외국의 인터넷 관련 청소년 보호 대책

5-3. 유럽의 경우

■ 자율기반의 공동규제, 통합 플랫폼과 액션플랜

유럽연합(EU)은 탈중심적이고 국경을 초월하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으로 인해 자율기반의 공동규제모델을 발전시켜왔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특성을 가진 유럽에서는 각국이 공동으로 '통합 플랫폼(www.sift-platform.org)'을 개발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2002년 실시된 호주 방송청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사용되고 있는 차단 프로그램들 가운데 50%의 소프트웨어가 포르노와 인종차별 내용을 차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정받은 필터링 S/W조차 영어로 된 불쾌한 단어만 차단할 뿐, 다른 언어로 된 불건전한 내용은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호주 방송청 조사에 나타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유럽 각국이 모여 공동으로 고안한 것이 바로 통합 플랫폼입니다. 통합 플랫폼의 목적은 인터넷 사업자와 학계, 시민단체가 합동하여 통합 필터링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다중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거주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정보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편, EU는 1990년대 중반부터 정보화사무총국의 주도 아래 공동규제 장치 및 시스템의 확립을 목표로 하는 '액션플랜(Action Plan on Promoting Safer Use of the Internet)'을 진행해왔습니다. 액션플랜은 유러피언 거버넌스(European governance)의 맥락에서 이용자의 권한 강화와 사업자의 책임 및 역할 분담을 골자로 하는 공동규제제도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리터러시(literacy), 인터넷 핫라인(hotline), 사업자 행동강령(code of conduct), 인터넷 자율등급제(self-rating/filtering system) 등이 주요한 규제 장치로 개발되었고, 민·관의 상보적인 협력 체계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 더 안전한 인터넷 프로그램(Safer Internet Programme)

1999년부터 2004년에 이르는 동안 EU는 두 차례에 걸쳐 '더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위한 실행계획(SIAP: Safer Internet Action Plan)'을 시행하였습니다.

SIAP의 주요 내용은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불법, 유해콘텐츠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2005년부터는 '더 안전한 인터넷 플러스(SIP: Safer Internet Plus)'를 추진 중입니다.

EU는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의 불법 유해물 신고센터인 핫라인(hotline)을 설치하고, 아동의 성 학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민간기관들이 연합하는 등 새로운 노력과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 2월 유럽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인터넷 환경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더 안전한 인터넷 프로그램(Safer Internet Programme)'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앞의 SIP를 승계하고, 여기에 사이버 폭력, 성희롱 등 유해한 행위를 계도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입니다. '더 안전한 인터넷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크게 4가지로 나뉘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불법 콘텐츠와 전쟁을 선포하기 위한 것으로 핫라인 네트워크(hotline network)를 만들어 모든 시민이 불법복제를 감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효과적으로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해 필터링 기술개발을 강화하여 자동으로 콘텐츠를 등급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안전한 인터넷 포럼을 만들어 산업, 아동복지조직, 정책 담당자들이 토론과 아이디어를 교환함으로써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넷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 학부모, 학생 등 인터넷 이용자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실행계획	설 명	예산 투입비율 (5천5백만 유로 중 %)
불법콘텐츠와 해로운 온라인 행동들에 대한 제재	특히 어린이 성폭력과 그루밍에 초점을 맞춰, 대중에게 불법 온라인 콘텐츠와 해로운 행위의 보고를 위한 국가의 컨택 포인트를 제공하는 활동	34%
더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촉진	이 분야의 자율규제 이니셔티브를 강화. 특히 청년 패널들을 통해 더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드는 데 어린이와 청년의 참여를 촉진	10%
대중 인식제고	어린이, 부모, 교사들을 목표로 하는 활동. 국가 인식 센터의 네트워크에서 최고의 실행들을 교환함으로써 몇 배의 효과를 장려함. 부모와 어린이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있는 방법을 조언 받을 수 있는 컨택 포인트를 지원	48%
지식 기반 구축	어린이에 의한 새로운 기술의 이용과 노력, 관련 위험에 있어 지식 기반 구축, 프로그램에서 진행하는 활동들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이를 이용	8%

〈더 안전한 인터넷 프로그램의 실행계획 및 예산투입비율〉

■ 불법 및 유해콘텐츠에 대응하는 다각적인 노력



2009년 2월, 유럽의 '더 안전한 인터넷 센터(European Safer Internet Centers)'의 네트워크인 INSAFE는 '더 안전한 인터넷의 날(Safer Internet Day)'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2004년부터 매년 2월에 열리는 국제적인 연례행사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책임 있는 인터넷 사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 6회를 맞이한 '더 안전한 인터넷의 날'은 어린이들을 위한 워크숍, 교사와 학부

모를 위한 세미나, 록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들이 유럽과 전 세계에서 열렸습니다.

아울러 Facebook, Myspace 등 총 17개 웹 선도 기업들이 2009년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이용하는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유럽 협약에 서명하였습니다.

EU는 불법 및 유해콘텐츠로부터 특히 아동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다각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대한 관리와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주요정책	Safer Internet Plus Programme(2005~2008)	어린이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을 도와주고, 유해한 콘텐츠의 생성을 막는 프로그램
	Safer Internet Programme (2009~2013)	불법 콘텐츠 제어에 더하여, 사이버 괴롭힘(bullying) 유해한 콘텐츠 제어를 위한 프로그램
추진체계	유럽인터넷감시망제공자협회 (INHOPE)	인터넷에서 아동 포르노를 없애고 인터넷의 유해하고 불법적인 사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범유럽게임정보협회(PEGI)	디지털 게임의 내용을 고려한 적정 이용 연령 제시

〈EU의 인터넷 유해정보 대응 정책〉



■ 영국의 인터넷 감시 재단(IWF)과 어린이 인터넷 안전 위원회(UKCISS)

EU 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영국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에 대해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규제부처와 민간 자율기구의 상호협력관계를 강조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 역시 인터넷 자율규제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데, 규제 대상은 주로 아동 포르노물이나 인종차별 등과 같이 현행 법규의 위반이 명백한 유해콘텐츠입니다.

1996년 9월 영국은 인터넷의 유해정보, 특히 아동 포르노그래피 규제를 목적으로 '인터넷 감시 재단(IWF: Internet Watch Foundation)'을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1998년 3월에 모두 10개의 범주를 5등급(0~4)으로 분류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에는 임상심리학자 타냐 바이런(Tanya Byron) 박사에 의해 정부, 업계, 부모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행동양식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명, '바이런 재검토(Byron Review into Children and New Technology)'라고 불리는 조사에 따라, 영국은 9백만 파운드를 들여 광고 캠페인을 계획했습니다.

인터넷과 비디오 게임의 위험성에 대해 학부모와 자녀들의 인식을 재고하기 위한 광고 캠페인에는 어린이의 인터넷 안전을 위한 위원회의 설립 요구가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9월 총리실 산하의 '영국 어린이 인터넷 안전 위원회(UKCISS: UK Council for Child Internet Safety)'가 발족되었습니다. 이는 BT, Facebook, Google, MS 등 산업계 및 정부, 부모, 어린이 관련 공공·민간단체 100여 곳 이상으로 구성된 거대 규모의 협력체입니다.

UKCISS의 주요 기능은 아동의 인터넷 자살사이트, 사이버 괴롭힘, 음란물, 불법 비디오게임 등 인터넷의 위험성과 해로운 콘텐츠가 포함된 불법 사이트를 감시하고 선도하는 것입니다.



< 인터넷 감시 재단(IWF: Internet Watch Foundation) >

■ 어린이 보호를 위한 영국의 다양한 프로그램

2001년 인터넷의 온갖 유해정보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영국 내무부장관의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영국은 이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정부와 인터넷 관련업체, 법률기관, 어린이 보호 전문가들과 함께 어린이 보호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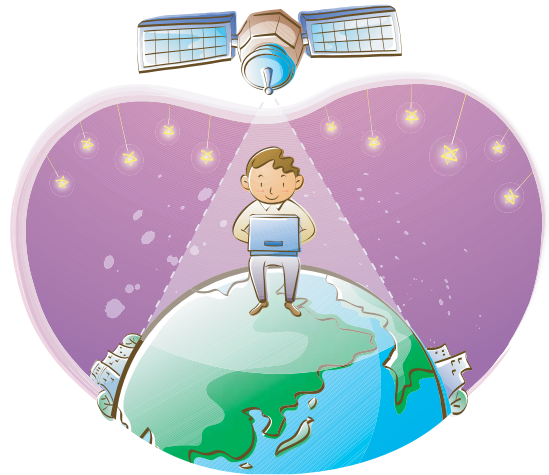
2008년 3월 영국 보수당은 어린이들이 인터넷에 개인정보를 올리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최근에 영국 문화부는 폭력적인 콘텐츠를 경고하기 위해 영화 방식의 연령등급을 웹사이트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국아동학대방지협회(NSPCC: 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는 인터넷상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컴퓨터 제조업체와 소매상들에게 보완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영국은 인터넷의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부처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의 이점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린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 출처 : www.iwf.org.uk 〉



영국의 인터넷자율규제 단체와 주요업무

- ▶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 연합회(ISPA: Internet Service Providers Association)
가맹 사업자들이 Data 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품질 유지 및 관련 시스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 인터넷 감시 재단(Internet Watch Foundation)
아동 포르노 사진, 인종 차별주의적 콘텐츠 등에 관한 대응방안 모색
- ▶ 인터넷 범죄 포럼(Internet Crime Forum)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영국내 수사기관이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부당한 컴퓨터 이용을 감시

5. 외국의 인터넷 관련 청소년 보호 대책

5-4. 일본의 경우



■ 총무성과 민간 자율규제기구의 공동 규제

일본은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 폭력범죄가 인터넷의 역기능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 관련 기구들의 규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종래의 규제 방식으로는 날로 방대해지는 인터넷 유해정보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규제 당국인 총무성과 민간 자율규제기구들 간의 공동규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총무성을 중심으로는 IT 및 인터넷 정책을 다루고, 민간 자율규제기구는 주로 내용규제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들 단체는 모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인터넷 내용규제에 관련해서는 다양한 법률이 존재하는데, 주로 미성년자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청소년 인터넷 규제법에서는 청소년 인터넷 유해정보를 막기 위해서 필터링 S/W를 개발, 보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8년 일본 민주당은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범죄를 막기 위해 인터넷상의 위법·유해 사이트의 삭제 의무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자살 권유나 아동 매춘의 온상으로 여겨지는 채팅, 아동 포르노 등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관명	기관소개
총무성 (Ministry of Internet Affairs and Communication)	행정부 조직, 인사시스템,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 기능 뿐만 아니라 체신, 정보통신 관련 정책을 관장
뉴미디어개발 협회 (New Media Development Association)	- 경제무역산업부 산하 비영리기관으로 새로운 미디어에 관한 연구 활동과 기술 자문 역할 - 불법·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등급 시스템 구축 및 무료 필터링 소프트웨어 개발·제공

〈 일본의 인터넷자율규제단체와 주요업무 〉

■ '안심넷 만들기' 촉진 프로그램

일본 총무성은 2007년 11월부터 '인터넷상의 불법·유해정보의 대응에 관한 검토회'를 개최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09년 1월, '안심넷 만들기' 촉진 프로그램을 책정하였습니다.

'안심넷 만들기' 촉진 프로그램은 안심을 실현하는 기본적인 법률적 규제와 민간기구의 자율적 규제 방안, 그리고 학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규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며, 특히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모바일 기능에도 필터링 S/W를 도입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시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심을 실현하는 기본적 범위의 정비	1) 안심 인터넷 이용을 위한 기본법제의 정비 등	(a) 휴대전화 필터링의 도입 촉진 (b) 필터링 추진 기관의 지원 (c) 자주적 대응을 추진하는 법제의 검토 (d) 「특정전자메일법」의 착실한 집행
	2) 국제 제휴 추진을 위한 범위의 구축	
	3) 여러 가지 제휴의 추진	
민간에 있어서의 자주적 대응 촉진	1) 위법·유해정보 대책의 추진	(a) 지금까지의 대응 강화 (b) 목표 공유를 위한 골조 구축의 지원
	2) 아동포르노의 효과적인 열람 방지책의 검토	
	3) 콘텐츠·레이팅(rating)의 보급 촉진	
	4) 위법·유해정보 대책에 이바지하는 기술개발 지원	
이용자의 육성 촉진	1) 가정·지역·학교에 있어서의 정보윤리교육	
	2) 부모의 컨트롤 교육	
	3) 이용자 육성을 위한 협조적인 추진	
	4) 위법·유해정보 대책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실시	

〈 '안심넷 만들기' 촉진 프로그램의 시책 〉

■ 민간단체와 공공기관의 다양한 필터링 SW

일본은 1996년부터 통상 산업성의 지휘 아래 인터넷 사업자협의회 형태인 '전자네트워크협회(ENC)' 주도로 '세이프티 온라인(Safety Online)'이라는 독자적인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세이프티 온라인'은 학교 중심의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로, 약 50만 개의 등급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시장규모와 인터넷 유해정보에 대한 자율정화 능력이 떨어지는 환경에서 진행되는 비영리적인 등급서비스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99년 ENC는 보다 효율적인 어린이 보호를 위해 2세대 레이블 뷰로 및 필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2001년 3월에는 민간사업단체인 '일본인터넷협회(IAJ: Internet Association Japan)'를 설립하였습니다. IAJ는 주로 인터넷 콘텐츠의 등급 판정, 사이버 범죄 대처, 지적재산권 검토, 필터링 S/W 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밖에도 일본은 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필터링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필터링 관련 대책은 크게 4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새로운 필터링 기술을 개발하는데 주력합니다. 현재 컴퓨터 단말기 위주로 보급되어 있는 필터링의 기능을 모바일을 위한 필터링 개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정치화면뿐 아니라 동화, 게임, 채팅 등에도 대응할 수 있는 필터링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둘째, 다양한 필터링 S/W의 이용도를 점검하고 보급을 촉진합니다.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컴퓨터 단말기에 대해 필터링 S/W의 이용도를 점검하고, 어린이가 있는 가정을 중심으로 필터링 S/W 활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터넷 유해정보 대책에 관한 도덕과 예절 교육을 강화합니다. 중앙정보, 지방공공단체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인터넷 이용에 관한 예절을 홍보하고, 전국 포럼을 통해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넷째, 상담 창구를 충실히 운영합니다. 중앙정부, 민간단체 등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상담창구에 민원에 따른 메뉴얼을 보완하고, 필요시 전문 상담창구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다양한 필터링 S/W 개발은 기존의 규제를 보완, 강화하는 동시에 꾸준히 새로운 기능을 개발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A young girl with dark hair, wearing a black long-sleeved top, a dark skirt with a white polka-dot pattern, white knee-high socks, and black shoes with white bows, is sitting on a white wooden bench. She is holding a large yellow rectangular sign above her head with both hands. The background is a bright green field under a blue sky with white clouds. Several large, clear bubbles are floating in the air around her.

www.safenet.ne.kr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덕분에
이젠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수 있어요!”

[illegible]